

보도시점 : 2026. 7. 15.(수) 11:00 이후(7. 16.(목) 조간) / 배포 : 2026. 7. 15.(수)

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7월 16일부터 지급

- 1대당 월 25만원 유류비 지원, 부정수급 차단 위한 모니터링·현장단속 강화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운덕)는 「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」을 개정하여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7월 16일부터 지급한다.

○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7일 공포된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」의 후속조치다.

□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및 전세버스 업체와 협의하여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다.

○ 지급대상은 경유 사용 전세버스(3.9만대, 전체 전세버스의 97%) 이다.

○ 노선버스에 지급 중인 ①유류세연동보조금과 ②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 지급하며,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 지급 단가의 70%*이다.

* ① (유류세연동보조금) 149원/ℓ ('26.7월 기준이며, 유류세액에 따라 변동)

② (유가연동보조금) 98원/ℓ (유가 1,900원/ℓ 기준이며, 유가에 따라 변동)

- 유가 1,900원/ℓ 기준 차량 1대당 월 25만원 수준의 유류비를 보조받는다.

○ 지급기간은 '26년 7월 16일부터 '27년 7월 15일까지 1년이며, 자원안보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1,500원/ℓ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 이내 범위를 정해 다시 지급토록 할 수 있다.

-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.
-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전용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.
 - 아울러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(예: 잦은 주유, 과도한 주유량 등)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·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·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.
 - 부정수급 적발 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,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강력히 제재한다.
-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“통근·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과거보다 확대되었고,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”면서,
- “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사업자 및 근로자의 처우와 전세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며, 전세버스업계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	책임자	과 장	나진항 (044-201-3823)
		담당자	서기관	정일웅 (044-201-3832)
			사무관	박삼범 (044-201-3824)